

제 4 장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 (이용료 등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제 14조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시설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시설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이용료 변경 사항 발생시 이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최대 이용료가 변경된 당해 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제 5 장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5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근거)

1. 이용자의 일반 사정 및 욕구사정(일상생활, 신체활동, 인지, 정서, 여가활동, 지역사회 연계등), 간호사정, 근골격계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3. 이용자의 상태변화가 있을시 서비스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대리인)가 상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 16조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손발톱정리, 귀 청소, 이·미용서비스 목욕도움(전신, 회음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소변, 대변 등
2. 기능회복훈련
 - ① 신체기능훈련 :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등
 - ② 기본동작훈련 :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등
 - ③ 일상생활 동작훈련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등
3. 개인위생관리 : 침구·린넨 교환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4. 정서지원: 외출이나 산책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5. 인지활동지원 : 인지정도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제공
6. 여가활동지원 : 웃음치료, 음악치료, 힘뇌체조, 햇빛투게더(산책), 차한잔의 여유
7. 관계 친화활동 지원 : 사회적응나들이, 지역사회문화와 사회활동 접하기 등
8. 간호 및 의료서비스 : 관찰 및 활력증상 측정, 혈당측정, 호흡기, 피부, 응급, 영양, 배설, 통증, 촉탁의사

- 진료지원, 연계병원 외래검진 지원, 응급실 후송지원, 호스피스등
9. 물리(작업)치료 : 기능회복훈련, 근골격계사정과 관리, 교육, 물리(작업)치료
 10. 사례관리 : 사례자를 선정하여 사정하고 사정 내용을 반영하고 평가
 11. 특별실 관리 : 감염병 의심자,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자, 시설내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는 자, 다른 입소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격리가 필요한자를 위해 특별실 관리
 12. 특별행사 서비스 : 설날, 추석, 어버이날, 연말(크리스마스 파티) 행사, 지역사회축제 참여 서비스
 13. 자유로운 종교활동 지원
 14. 지역 사회 내에서 입소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15.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노인복지 연계활동을 한다.
 16. 급식서비스 : 이용자의 급식서비스는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축탁의사나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 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있게 식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7조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연세요양원의 지정 계좌입금,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 1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다른 이용자,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3. 합숙용(2인실 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4.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제 18조 (17조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3.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